

2. 네덜란드(Netherlands)

1.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01년
- 현행법 : 1957년(노령연금) ; 1959년(유족연금) ; 1966년(근로자 장애연금);
1998년(자영자 장애연금); 1998년(청년장애인 장애보조금);
2005년(근로자 장애연금, 2006년 적용)

2.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

3. 적용대상

네덜란드 거주자와 노동자

4. 자원조달

- 가입자 및 자영자
 - 노령연금: 소득의 17.90%
 - 유족연금: 소득의 0.1%
- ※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상한액: 연 € 33,994
- 사용자
 - 장애연금: 근로자의 장애연금을 위한 임금지급총액의 6.27% + 2006년 이후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의 변동보험료
- ※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상한액: 연 € 54,614
- 정부
 - 최저임금 비율에 따라 산정되는, 수급형태에 따라 다양한 사회최저연금 보장을 위한 보조금
 - 유년기부터 장애상태인 자와 학생에 대한 연금급여 비용
 - 사용자로서 납부

5. 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연금
 - 66세 도달자 (2022년까지 66세 3개월 차로 조금씩 상향 조정 예정)
 - 완전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16세 ~ 66세까지 50년간 거주했어야 함 (17~66세 3개월 차로 조정 예정)

- 소득이 있었을 경우에는 매년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함
- 같은 집안에 사는 부부가 둘 다 완전연금 조건에 부합하면 부부연금을 받을 수 있음.
- 공휴일 보조금: 노령의 수급자들에게 지급.
- 부분연금 : 나이는 족지만 완전연금 거주 조건을 정년 이전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분연금을 받을 수 있음.
- 배우자 보조수당: 2015년 1월 1일 이전에 정년을 맞았고 아직 정년을 맞이하지 않았으며 월 소득이 €1,411.13 (연금 소득의 경우 €782.95) 미만인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배우자가 정년을 맞을 때까지 보조금이 지급됨. (2015년 4월 이후의 신규 AOW 수급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음)
- 보충수당 (소득 확인함): 수급자의 가족의 소득이 최저소득에 미치지 못할 경우 지급됨.
 - 최저소득은 나이, 거주지, 가족 구성 (독신, 기혼) 등에 따라 다르게 산정
 - 국외지급 불가
- EU국가에 거주하고 있거나 상호협정이 체결된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면 급여의 국외지급 가능. (보충수당 제외)

○ 장애연금

-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함:
 - 정년 미만의 근로자가 장애로 인해 노동능력을 상실한 정년 미만의 근로자 (최소 80%의 영구적인 노동 능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함)
 - 장애를 얻기 이전에 비해 20%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는 자
 - 회복의 가망이 없고
 - 노동/소득창출능력 상실 이전에 근로하고 있었던 사람
 - 또한, 질병에 대한 현금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아야 함
 - 장애 정도는 의료분야에서 심사. 장애연금은 정년이 지나면 노령연금으로 교체됨.
- 부분장애소득연금:
 - 정년 이전의 근로자 중 노동능력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자 (장애정도 35%~79%, 영구적 & 비영구적)
 - 비영구적으로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 (장애정도 80%~100%)했으며 현재 이전 소득의 65% 이하를 얻고 있는 자
 - 질병에 대한 현금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지 않아야 함.
- 부분장애보조금: 잔여소득평가액의 50% 이상의 소득을 얻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연금 지급기간 이후에 지급
- 사후부분장애수당: 잔여소득평가액의 50% 이하의 소득을 얻고 있는 근로자들에게

지급됨.

- 상시간호수당: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 (영구적/비영구적, 장애정도 80% 이상)한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일과 수행에 상시 간호를 요하는 자
- 보충수당 (소득 확인함): 수급자 가족의 월 소득이 최저소득보다 낮은 자
 - 최저 소득은 연령, 거주형태, 가족구성 등에 따라 다르게 정의.
- 청년장애연금
 - 17세 혹은 그 이전에 (장애를 얻기 이전 년도에 6개월 이상을 학생 신분으로 있었다면 30세 혹은 그 이전) 노동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었고 현재 학생 신분이 아닌 자에게 지급.
 - 수급자가 노동능력을 회복하는 경우, 해외에 거주하게 되는 경우, 정년을 맞이할 경우 등의 경우 연금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.
 - 상시간호수당: 수급자가 일상생활에 타인의 간호를 필요로 할 경우 지급.
 - 보충수당 (소득 확인함): 수급자 가족의 월 소득이 최저소득보다 낮을 경우 지급.
 - ※ 최저 소득은 연령, 거주형태, 가족구성 등에 따라 다르게 정의됨.
- 국외지급 불가

○ 유족연금

- 유족급여(소득 확인함)
 - 미망인, 홀아비, 사실혼배우자, 18세 이하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자, 또는 16세(장애가 있는 경우 18세, 학생인 경우 21세) 이하의 완전고아에게 지급
 - 휴일 수당: 유족연금 수급자에게 지급.
 - 유족수당은 재혼이나 동거 시 지급이 중지됨.
 - 정년이 지나면 유족수당은 노령연금으로 전환됨.
- 사망급여
 - 근로자, 질병/장애수당 수급자, 노령연금 수급자, 혹은 유족연금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시 지급됨.
 - EU 회원국 거주 시 해외지급 가능; 타 국가는 상호협정 하에 가능.

6.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- 독신 : 월 € 1148.40
- 부부(사실혼관계 포함) : 모두 65세 이상인 경우 각각 월 € 782.95 지급
- 배우자(사실혼 포함)가 65세 미만인 65세 이상자는 월 € 782.95 지급
 - 부부의 총합 소득이 €2,760.87 이상일 경우, 정년 미만의 배우자가 소득이 있었으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미납기간 중 16년을 초과하는 해마다

2%씩 최대 10%가 감액됨

- 최소 미납기간은 2022년까지 17년 3개월로 상향 조정 예정
- 2015년 4월 이후의 AOW 연금 가입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음.
- 휴일수당: 연 1회 (5월) € 51.01~102.02의 휴일수당 12회 지급
- 부분연금: 보험료 미납기간 1년당 2%씩 연금 삭감
- 보충수당 (소득 확인함): 수당이 지급될 수 있음.
- 지급액은 매년 1월과 7월에 산정되며 법정최저지급에 따라 변경됨.

○ 영구장애급여

- 장애연금: 본래 일당의 75%를 지급
 - 보통 휴직 시점에서 2년(104주) 후 지급
 - 부분장애소득연금: 2달간 가입자의 본래 일당의 75% 지급, 이후 70% 지급.
 - 연금은 근속년수에 따라 3개월에서 38개월 동안 지급됨.
 - 장애 발생 이후에 근로를 통해 본래 75% (2달 후에는 70%) 이상의 소득을 얻는 자의 연금은 삭감됨
 - 부분장애보조금: 최대일당과 근로자 본래 소득 혹은 잔여소득평가액(둘 중 더 큰 것)의 차액의 70% 지급.
 - 사후부분장애수당: 법정최저임금의 28~50.75% 지급. 최대한도는 € 209.26.
 - 상시간호수당: 가입자 일당의 85%~100% 지급.
 - 보충수당 (소득 확인함): 수당이 지급될 수 있음.
 - 지급액은 매년 1월과 7월에 산정되며 법정최저임금에 따라 변경됨.
- 청년장애연금: 수급자의 월 소득이 법정최저임금(청년)의 75~100%가 되도록 지급.
 - 예: 27세에 완전장애자이고 소득이 없는 자에게 최저임금의 75%를 지급
 - 성인(22세 이상) 법정최저임금은 €1,578, 청년(18~21세) 법정최저임금은 €749.55~€ 1,341.30
 - 청년장애연금 일일 최대 지급액은 € 72.55.
 - 상시간호수당은 해당되는 법정최저임금의 85~100%를 지급.
 - 보충수당 (소득 확인함)이 지급될 수 있으며, 지급액은 연 2회 법정최저임금에 기반을 두어 조정.

○ 유족연금

- 유족연금 : 미망인(홀아비) 또는 사실혼 배우자 : 월 € 1178.38
 - ※ 집안에 21세 이상의 사람 (학생, 입주자 제외)이 있다면 월 €755.92
 - 휴일수당: 연 1회 (5월) € 37.87~85.47의 휴일수당이 12회 지급됨 (가구 내 성인의 수에 따라 변경)
 - 부분연금 : 네덜란드에서 근무/거주하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미납한 해만큼 연금이 감액될 수 있음.

- 소득조사 : 근로소득 중 최저임금(월 € 1,407.60)의 50%에 이 금액을 초과하는 총소득의 33.3%를 가산한 금액은 감액여부 결정시 고려되지 않음
- ※ 월 소득이 € 2,556.57 이상인 경우 급여는 지급되지 않음
- 고아연금 : 10세 미만의 완전고아 1인당 월 € 377.08 지급
 - 10세 ~ 15세인 경우는 € 565.62 지급
 - 16세 ~ 18세(학생인 경우 21세)인 경우는 € 754.16 지급
 - 연 1회 (5월) € 27.35~54.70의 휴일수당이 12회 지급 (지급액은 고아의 나이에 따라 바뀜.)
 - 여기에 추가로 월 € 16.92가 살아있는 부모와 고아 본인에게 지급
- 사망일시금
 - 근로자의 사망 : 소득의 100% (1일 소득상한액인 € 205.77까지)
 - 실업자의 사망 : 최저임금(월 € 1,524.60)까지
 - 장애 또는 질병급여 수급자 사망 : 1개월분 지급
 - 노령, 유족연금 수급자 사망 : 노령, 유족연금의 100% 지급. 유족연금의 100%를 부양하고 있는 자녀에게 지급
 - 순 최저임금의 변동에 따라 1년에 2회 모든 연금액이 조정됨

7. 관리운영기관

- 노동소득조사서비스(Inspection SZW)
 - <http://www.inspectieszw.nl>
 - 보험료에 대한 전반적 감독과 현금급여 관리
- 사회보험은행(Social Insurance Bank : SVB)
 - <http://www.svb.nl>
 - 노령연금 및 유족연금의 관리운영
 - 사용자는 최초 2년간의 장애가 판정되면 근로자에게 장애급여를 지급
- 근로자급여청(Institute for Employee Benefit)
 - <http://www.uwv.nl>
 - 장애급여 관리
- 세금 및 관세국세청(National Revenue Department of the Tax and Customs Administration)
 - <http://www.belastingdienst.nl>
 - 장애급여를 위해 근로자를 대신하여 보험료 징수